

『 제 12 회 지식재산대상 』 안내

2023. 7

지식재산대상 사업개요

1. 근거

- 산업발전법 제27조(사업의 장려)
-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2. 포상목적

-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의 기반, 창출, 활용,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 지식재산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단체 및 개인들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치하함
- 순수 민간차원의 포상제도로서, 참여기관의 지식재산 분야의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고취함
- 포상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통해 참여기관간의 창조적 협력사업 모색

3. 기본방향

-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교육역량과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책임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지식재산의 기반,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기업·단체를 선정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및 기준, 방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를 선정
- 기타 포상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포상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세계시장의 주목을 받은 경우, 사회경

제적 의미가 큰 분쟁에서 가치를 수호한 경우,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경우,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활동을 펼친 경우를 집중적으로 포상함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타 포상처리지침에 의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포상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과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정부포상제도로 승격 가능

4. 주최 및 주관기관

- 주최: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KAIST
- 주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5.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년 8월 18일(금)

6. 포상일시 : 2023년 10월 중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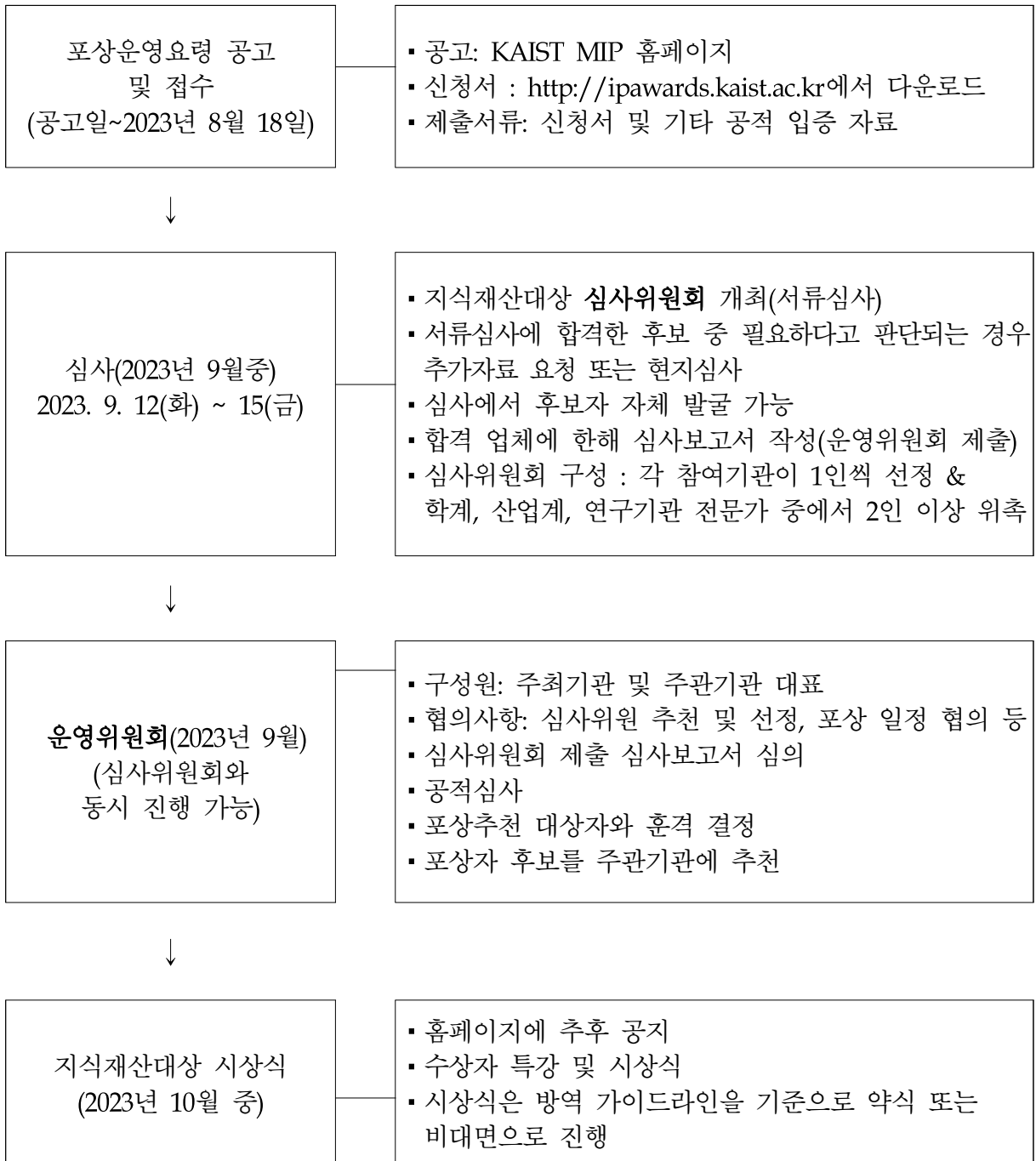
7.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상의 종류	수량	포상 대상
대 상	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 대학 또는 소속 교수, 연구원 ○ 발명/창작 관련 단체 또는 그 구성원 ○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 ○ 기타 지식재산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부문상 (지식재산 기반, 창출, 활용, 보호)	3팀 내외	

8. 포상 내용

: 상패 및 메달

10. 추진 절차



10. 심사 운영

가. 심사기준: 별표 참조

나. 지식재산대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 분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 수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심사 ○ 심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내용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절차, 기준에 따라 포상 신청자의 공적에 관한 서류 및 현지심사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의 장 혹은 그 대리인의 협의체로 구성 ○ 간사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책임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중 위촉 ○ 간사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책임교수
의결조건	위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결에 부칠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1. 포상기준

가. 수공기간

-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수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지 않도록 하되, 재포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함

다. 신청 및 추천 제한 (원칙적으로 정부포상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최종적으로 판단)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고려함.

12.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한 : 2023년 8월 18일(금)
- 관련 양식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홈페이지(<http://ip.kaist.ac.kr/>) 또는 지식재산대상 홈페이지(<http://ipawards.kaist.ac.kr>)에서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처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정은수, 김민지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373-1)

대학2호관(N5) 2232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 전 화 : 042)350-4222~3, 02)3498-7515 - 팩 스 : 042)350-4020

- e-mail : esjeong@kaist.ac.kr

- 홈페이지 : <http://ipawards.kaist.ac.kr>

<http://ip.kaist.ac.kr/>

13. 기타사항

- 세부지침 : 포상 심사·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나 지침 또는 본 운영요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일 및 유효기간 : 본 포상운영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여, 포상 행사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지식재산대상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지식재산 분야 업무 혹은 사업실적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 수행, 출원등록 등)
지식재산 분야 수상실적 (정부포상, 민간기관포상 포함)
관련 지식재산 업무의 국가경제적 중요성 및 난이도
보유 지식재산의 국제적 지명도 (명세서, 학술지, 언론의 인용건수)
권리화 성과(핵심기술과 브랜드의 전략적 개발 및 발굴 등)
사업화 성과(해외 기업에 대한 라이선싱과 국제기술거래 실적)
분쟁예방 성과(전략적 출원, 우회발명, 전략적 라이선싱을 통한 분쟁예방 성과)
가치수호 성과(해외기업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활동으로 기업가치 수호)
경제기반 조성 성과(지식재산 산업기반 조성, 외화획득, 고용확대, 파생산업 창출 성과)
사회공헌 성과(지식재산경영에서 창출된 수익의 사회 환원, 환경보호와 녹색 성장 성과)
총 10개 항목. 심사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의 기반,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의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있는 경우를 수상대상자로 선정